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22년04월28일

신한퇴직연금코리아통신통40증권투자자산[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b>제3영업일</b>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b>3영업일</b>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b>대차대조표</b>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b>재무상태표</b>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b>대차대조표</b> 2. 손익계산서 (생략)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b>재무상태표</b> 2. 손익계산서 (현행과 같음)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37조 (보수)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 일 <b>대차대조표</b>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생략)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 일 <b>재무상태표</b>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현행과 같음)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b>신설</b> >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b>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b> )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3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 4 집합투자업자의 관련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신한상대가지종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신한코리아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b>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b>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b>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b>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신한상대가지종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신한코리아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b>&lt;삭제&gt;</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b>&lt;삭제&gt;</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생략>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b>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b> 」에 따른 <b>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b>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생략>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b>&lt;삭제&gt;</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부 12. 기준가 산정기준 및 평가	제2부 12. 기준가 산정기준 및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b>대차대조표상</b>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제2부 12. 기준가 산정기준 및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b>재무상태표상</b>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b>&lt;신설&gt;</b> <이하생략>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b>(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b> <현행과 같음>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설>	<b>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X (해당없음)</b>
3.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신한코리아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정순(책임운용역), <b>김현우(부책임운용역) &lt;삭제&gt;</b>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신한코리아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정순(책임운용역) <b>-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2년 03월 31일)</b>
4. 집합투자업자의 관련 사항 업데이트: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 <b>최근현황 갱신</b>

<b>4. 집합투자업자의 관련 사항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b>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b>최근 현황 갱신</b> 라. 운용자산 규모 - <b>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2년 03월 31일)</b>
---	---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기재
- 3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b>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b> <b>[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b>	운용전문인력 * 신한코리아로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정순(책임운용역), <b>김현우(부책임운용역)&lt;삭제&gt;</b>	운용전문인력 * 신한코리아로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정순(책임운용역) - <b>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2년 03월 31일)</b>
<b>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기재:투자비용</b>	투자비용 - 표	투자비용 - 표 <b>총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신설</b>
<b>3.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기준가격</b>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b>대차대조표</b>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b>재무상태표</b>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